

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

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의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,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

동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,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의

① 본인은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22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.

•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(제3자)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
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해양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, 검·경찰관서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 등
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 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 등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
[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체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·보험사고 조사업체·손해사정업체, 위탁콜센터, 의료기관(의사), 법무법인(변호사), 추심업체, 잔존물 매각업체], 손해보험협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(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 등) 등

•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
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
-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·계약관리 업무

